

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

성 명			생년월일		
교육기관명			학과(과정)명		

구분	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 1에 따른 과목명	최소 이수 과목수	이수 내용		
			이수 과목명 (영 별표 1에 따른 과목명과 다른 경우)	이수연도	이수학기
보조공학사 기초		3			
보조공학사 응용 및 실기		3			

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, 영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 사실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교육기관장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※ 비고(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)

- 이수 내용은 성적증명서와 같게 기재한다.
- 이수 과목명이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명과 같지 않아도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으로 본다.